

제174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면
 ○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7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의 안 번 호	1273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5. .

제 안 자 : 김성배 의원 외 5인

1. 개정이유

- 가.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사항과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현장감 있게 발언 (5분 자유발언, 구정질문)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.
- 나. 2006년 6월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씀.
- 나.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(「」)를 사용함.
- 다.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있는 5분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,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제한을 삭제 (안 제32조2 제2항·제3항)
- 라. 임시회 개회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시간을 “1시간”에서 “100분”으로 변경함.(안 제65조의2제2항)
- 마.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에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변경함.
 (안 제70조제1항, 안 제71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안 제72조제1항·제2항, 안 제75조, 안 제79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안 제82조제1항, 안 제8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(윤리위원회)
-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제2항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없음

다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, 제14조제2항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『지방자치법』”으로 한다.

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②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회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. 다만,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 할 수 없다.

제65조의2제2항중 “1시간”을 “100분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, 제71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72조제1항·제2항, 제75조, 제79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중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	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			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</u> 제6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	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	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	②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----- ----- -----			
③~④ (생 략)	③~④ (현행과 같음)			
제32조의2(5분자유발언)	제32조의2(5분자유발언)	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<u>제1차 본회의 개회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. 다만,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②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<u>본회의 개회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. 다만,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.</u>			
③ <u>5분자유발언은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,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.</u>	③ <u>5분자유발언은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,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.</u>			
④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	③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5조의2(구정질문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임시회 개회일에 <u>1시간</u>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민원과 시책추진사항등 구정의 개별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 대하여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 ③~⑤ (생략)	제65조의2(구정질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100분----- ----- ----- -----. ③~⑤항 (현행과 같음)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② (생략)	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----- 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에 회부한다. ②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 ③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71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----- 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. ②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③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 ②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의 허가를 받아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 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 ②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75조(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)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·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	제75조(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) 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
제7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 ② 위원장은 소속의원 중에서 징계대상자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 ③ (생략)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미리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	제7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(심문 및 변명) 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82조(심문 및 변명) ①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8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의장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 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83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